■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[별표 8의2] <개정 2022. 6. 16.>

농업기계 형식표지판(제14조의2제2항 관련)

1. 본체에 부착해야 하는 농업기계 형식표지판

110mm ± 40mm

65mm ± 20mm

농업기계 형식표지판	
기 종 명	
형 식 명	
규 격	
제조년월	년 월
제조번호	
제 조 자 (공급자)	제조사/제조국(수입품의 경우) 상호, 전화번호, 주소
용 도	**이 기계는 농업용입니다.**

가. 재료: 금속 재질
나. 색: 글씨 및 테두리(검정색), 바탕(은백색)
다. 글씨체: 신명조
라. 글씨크기: “농업기계 형식표지판”과 “이 기계는 농업용입니다”(16P, 굵은글씨), 이하 내용(14P, 굵은글씨), 상호, 전화번호, 주소의 글자크기는 임의로 설정 가능
마. 제조번호 표시: 별표 8의3의 표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표시한다.

2. 엔진에 부착해야 하는 농업기계 형식표지판

50mm ± 15mm

70mm ± 25mm

농업기계 형식표지판	
용 도	농업용 엔진
형 식 명	
정격출력 /회전수	kW/rpm
최대출력 /회전수	kW/rpm
제조번호	
제 조 자 (공급자)	제조사/제조국 (수입품의 경우) 상호, 전화번호, 주소

가. 재료: 금속 재질 또는 테프론스티커
나. 색: 글씨 및 테두리(검정색), 바탕(은백색)
다. 글씨체: 신명조
라. 글씨크기: “농업기계 형식표지판”(14P, 굵은글씨), 이하 내용(12P, 굵은글씨), 상호, 전화번호 및 주소의 글자크기는 임의로 설정 가능
마. 제조번호 표시: 별표 8의3 제1호나목에 따른 제조연도부호나 그 밖에 제조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숫자를 포함하여 표시한다.